

특수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학칙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취득 자격) 다음 각 과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학위취득 자격을 갖는다. 다만, 전공별 학위수여 요건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학위논문 과정의 경우

1.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80점) 이상인 자
3.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② 학위논문 대체과정의 경우

1. 연구학점을 제외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80점) 이상인 자
3. 학위논문 대체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해당 대학원)

제3조(학위종별)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특수대학원학칙 제34조와 같다.

제 2 장 자격시험

제4조(자격시험) ① 자격시험은 소속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3.03.01)

②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과목추가이수과정에 있는 자가 30학점을 이수한 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하여는 각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4조의 2(학위논문 대체 인증시험) 학위논문 대체 인증시험은 학위논문 대체 과정을 신청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가. 응시자격 :

2-4-5~2 제2편 학칙

1) 4학기 이상 등록자로서 18학점 이상 이수자

2) 각 전공 책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시행주기 : 학기당 1회 실시

다. 시험과목 : 기 이수한 교과목 중 3과목 이내 (개정 2014.11.18.)

라. 평가기준 :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마. 사정회 : 시험성적이 나온 후 각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합격여부를 확정한다

제5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3.01)

1. (삭제 2013.03.01)

2. 종합시험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중 18학점 이상을 평점평균이 3.0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제6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3.03.01)

2. 종합시험 과목은 기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내로 실시하되,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8.)

제7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응시원서(별지서식 제2호)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1., 2014.11.18)

제8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학기 초에 실시한다. (개정 2013.03.01)

제9조(출제와 평가) 종합시험의 출제와 평가는 본 대학의 전임 또는 외래교수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한 각 위원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13.03.01)

제10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의 성적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며 80점 이상을 합격점으로 한다. (개정 2013.03.01)

제11조(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 할 수 있다. 다만, 재시험은 불합격 과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개정 2013.03.01)

제 3 장 학위청구논문 심사

제12조(논문지도) ①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연한 이내에 3회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수업연한 내에 학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논문제출학기에 추가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논문지도신청서(별지서식 제3호)는 해당학기초 수강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논문지도교수) ①논문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이 지도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제2차학기 또는 제3차학기초에 원생의 신청에 의해 각 대학원장이 위촉 승인한다.

③위촉받은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작성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말에 논문지도보고서(별지서식 제4호 및 제5호)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학기에 한정하여 제한 적용하며, 논문지도교수 1명이 한 학기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은 석사과정 5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각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논문지도교수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지도교수와 책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논문지도 신청)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논문지도비와 논문지도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석사학위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과정에서 4개학기 또는 5개학기 이상 수학(예정자)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4.11.18.)
3. 소정의 학점을 전부 취득한 자로서 그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
4. 3개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80점 이상의 연구학점 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5. 입학 후 6년 이내인자(휴학기간 제외),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년이 초과되어도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①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지도교수의 책임지도 아래 학과 주임교수, 학과교수 및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다수의 연구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논문계획서를 공개 발표하여 논문작성의 주제, 연구방법의 타당성, 예상되는 연구결과 등을 검증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의 발표는 논문제출 1학기 전에 마쳐야 한다.

2-4-5~4 제2편 학 칙

제17조(학위청구논문 신청)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기일 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 및 구두시험원(별지서식 제 8호) 1부
2. 학위청구논문 및 개요 각 3부

제18조(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시기는 4월말과 10월말로 한다.

제19조(학위청구논문 체제와 규격) 학위청구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구성) ①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논문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수 3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속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심사위원장) ①각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②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결과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③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22조(심사위원 교체금지) 논문심사를 시작한 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각 대학원장이 보궐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심사방법) ①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서면으로 실시하는 예비심사와 구술심사인 본심사로 분리하여 시행하고 3회 이상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각 대학원장은 논문제출자의 소속, 성명, 논문제목, 심사일시와 장소 등을 사전 공고한 후 심사하며 구술심사 중 1회 이상은 공개심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심사위원은 논문주제와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연구태도 등을 심사하여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당해 학기 논문제출 마감일까지 수정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차후 학기에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논문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심사중인 논문에

한하여 1학기 내에서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합격기준) ①서면심사 및 구술시험에 대한 평가는 가(可), 부(否)로 한다.

②합격기준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위원이 가(可)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25조(재심사) 학위청구논문이 심사에서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1학기이상 경과 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심사결과 보고) ①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를 소정의 양식(별지서식 제10호)에 의거하여 학위청구 논문심사 판정 결과를 기록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의 요지를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 종합보고서(별지서식 제11호)에 기록하여 합격·불합격 판정을 내린 후 소정기일 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심사기간) 논문심사는 본 대학원 학사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8조(논문제출) ①학위청구논문 제출자가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수정 완료하여 확인을 받은 다음 논문인쇄허가서(별지서식 제12호)를 소속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한 후, 논문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학위논문 인쇄가 완료되면 지정기일 내에 논문 4부를 각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본이어야 한다.

제29조(우수학위논문 포상) 우수 학위논문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와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학위기) 학위수여는 대학원학칙 별표 3에 의한 학위기로 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본 시행세칙 시행과 동시에 각 특수대학원별 학칙 시행세칙은 폐지하며 각 특수대학원의 시행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본 통합학칙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4-5~6 제2편 학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규정 개정안 중 제2조는 2003학년도 2월 수료 예정자부터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원생은 통합전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을 따른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경원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원생은 통합전 경원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및 규정을 따른다.

부 칙(개정 2013.03.26)

이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석사과정 외국어시험 응시원 (삭제 2014.11.18.)

(별지서식 제3호)

학년도 학기

(제 회분) 석사학위 논문지도 신청서

주 소 : (전 화 :)

직 장 : (전 화 :)

학 과 : 전 공 :

학 번 : 성 명 :

논문제목 :

논문지도교수명 :

논문제출 예정일 : 학년도 학기

위와 같이 석사학위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인 : (인)

논문지도교수 : (인)

0 0 대 학 원 장 귀 하

2-4-5~10 제2편 학 칙

(별지서식 제4호)

학년도 학기

논문지도 의뢰서 (회분)

논문 제목 :

석사과정 학과 :

전공 :

학번 :

성명 :

논문지도교수 :

교수

위 사람의 논문지도를 의뢰하오니 지도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0 0 대 학 원 장

(별지서식 제5호)

논문지도 보고서					
학 과		전 공		학 번	
성 명	(한 자 :)				
논문제목					
논문지도내용					
논문지도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논문 지도결과를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도교수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0 0 대 학 원 장 귀 하</p>					

(별지서식 제6호)

학위논문연구 계획서

논문제목 :

(부제 :)

순위	연구일정	일정별 주제	연구내용 및 참고문헌

발표예정일시 : 년 월 일 시

20 년 월 일

제출자 학과(전공) :

학 번 :

성 명 : (인)

논문지도교수 : (인)

(별지서식 제7호)

연구계획서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학 과		전 공		
학 번		성 명	지도교수	
일 시		장 소		
참석자				
1. 제 목				
2. 발표내용 요지 및 공개토론에서 논의된 주요사항.				
3. 지도교수 강평				
<p>_____의 논문계획서 공개발표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200px;">지도교수 (인)</p> <p style="margin-left: 100px;">0 0 대 학 원 장 귀 하</p>				

(별지서식 제8호)

학년도 제 차 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 및 구두시험원

학 과(전 공) : 외국어시험 합격일자 : 년 월 일
학 번 : 종합시험 합격일자 : 년 월 일
성 명 : 논문지도 회수 : 회

논문 제목 :

본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와 구두시험을 받고자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이에 신청합니다.

첨 부 : 논문원고 및 논문초록 각 3부

20 년 월 일

위 원 인 : (인)

지도교수 : (인)

0 0 대 학 원 장 귀 하

연 락 처 :

(전화 :)

청구논문 심사료

년 월 일

원

(별지서식 제9호)

학위논문공개발표 결과보고서					
학 과		전 공		성 명	
발표학회 또는 논문게재지 (발표학회는 정규학회 모임이 아닌 연구모임 등도 가능함)					
발표일시			년	월	일 시
참석자(연구발표의 경우에 한함)					
1. 학위논문 제목					
2. 발표내용 요지 또는 발표 후 토론 등에서 논의된 주요사항					
3. 지도교수 강평					
<p>_____의 학위논문을 위와 같이 공개발표하였음을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발 표 자 : (인)</p> <p style="text-align: right;">지도교수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0 0 대 학 원 장 귀 하</p>					

(별지서식 제10호)

논문심사 및 구두시험 결과보고서

제출자 : _____ 학과 _____ 전공 성명 : _____

논문심사 및 구두시험 평가 결과 : 합격 (), 불합격 ()

수정지시 사항 :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 위원 : _____ (인)

0 0 대 학 원 장 귀 하

(별지서식 제11호)

담 당			원 장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 종합보고서

논문제출자 : _____ 학과 _____ 전공 성 명 : _____

논문제목 : _____

심사 기간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종합 판정 : 합격 (), 불합격 ()

심사요지 및 심사평 :

첨 부 : 논문심사 및 구두시험 결과보고서(각 심사위원별 작성) 3매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심 사 위 원 장 : _____ (인)

심 사 위 원 : _____ (인)

심 사 위 원 : _____ (인)

0 0 대 학 원 장 귀 하

(별지서식 제12호)

담 당			원 장

석사학위 청구논문 인쇄 허가서					
학 과		전 공		성 명	
논문제목	국 문				
	영 문				
상기 논문을 인쇄하도록 허가함					
20 년 월 일					
논문심사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0 0 대 학 원 장 귀 하					